

4.2.11 직원징계규정

제정 1995. 12. 09.

개정 2003. 04. 11.

개정 2022. 06. 23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 초당학원 정관 제114조에 의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신분보장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제1조에서 “직원”이라 함은 학교법인 초당학원 및 초당대학교 직원(일반직, 기술직, 기능직, 별정직, 계약직(일반계약연봉직, 임시계약직))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 및 정원) ① 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당학원법인에 직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9인(위원장 1인 포함)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06.23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22.06.23.>

제4조(위원회의 직능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인사담당 직원이 간사가 된다.

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.

제5조(징계의 사유 및 종류)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1. 법령,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
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및 근무를 태만히 한 때
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② 징계는 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2.06.23.>

③ 징계기준과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르며, 임면권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한다. <개정 2022.06.23.>

④ 삭제 <2022.06.23.>

⑤ 삭제 <2022.06.23.>

⑥ 삭제 <2022.06.23.>

제6조(징계의결의 요구) ① 임면권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제5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 <별지 제1호 서식>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 다만, 관계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기관의 규정에 준한다.

③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<별지 제2호 서식>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징계의결의 기한)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

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진상조사 및 의견청취)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자는 서면으로 진술을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<별지 제3호 서식> 또는 전화로 징계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하며,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며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거나, 2회 이상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대상자의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0조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비밀누설 금지)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(제척) 징계위원 중 징계혐의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그 자신이 징계혐의자일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.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13조(징계의결)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<별지 제4호 서식>에 의한 의결서에 주문과 이유를 밝혀 의결하고 <별지 제5호 서식>에 의하여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임면권자는 <별지 제6호 서식>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재심) 전조제2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<별지 제7호 서식>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5조(징계처분의 정정 및 손해배상) ①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.

②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당해 직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되, 그 배상액은 재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6조(위임규정)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.

징계사유 설명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소속		직위	
	생년월일				성별	
	주 소					
징 계 사 유						
징 계 사 유 근 거						
<p>위와 같이 징계사유 설명서를 송부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교법인 초당학원 이사장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_____ 귀하</p>						

징계처분 통지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소속		직위	
	생년월일				성별	
주 문						
이 유						
<p>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교법인 초당학원 징계위원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원장 (인) 간 사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교법인 초당학원(초당대학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_____귀하</p>						

<별지 제6호 서식>

징계처분 사유설명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소속		직위	
	생년월일				성별	
주 문						
이 유						
<p>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교법인 초당학원 직원징계위원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_____ 귀하</p>						
<p>참고 :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						

재심 청구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소 속		직 위	
	생년월일				성 별	
	주 소					
재 심 청 구 사 유						
유 침 서 류	1. 징계의결서(또는 처분통지서) 사본 2. 재심에 필요한 증거					
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청구인	(인)					
학교법인 초당학원 직원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

재심 의결서

개 회 일 시		개 회 장 소	
징계 대상 의 자 항	성 명		소 속
	생년월일		
	주 소		
재 심 의 결 주 문			
이 유			
위와 같이 재심 의결함. 년 월 일 학교법인 초당학원 직원징계위원회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width: 100%;"> 위원장 (인)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width: 100%;"> 위 원 (인)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width: 100%;"> 위 원 (인)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width: 100%;"> 위 원 (인)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width: 100%;"> 위 원 (인)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width: 100%;"> 간 사 (인) </div>			

<별표 1> 삭제 <2022.06.23.>